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16. ~ 4.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월 2일”을 “2028년 1월 2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u>2024년 12월 31일</u> 이전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의 보증서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등의 제출을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① ----- ----- ----- ----- <u>2026년 12월 31일</u> ----- ----- ----- ----- <u>2027년 12월 31일</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u>2026년 1월 2일까지</u>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u>2028년 1월 2일</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